# 급여제공 계약서

공정거래위원회

[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,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,방문요양]

이용자, 제공자 및 대리인(보호자)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

| 계약당사자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이용자 (갑) | 성 명 | 홍 길동 (인) | 등 급 (인증번호) | |
| | 생년월일 | | 연락처 | 자택) |
| | 주 소 | | | |
| | 기 타 | ☐ 일반 ☐ 50%경감대상자 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| | |
| 제공자 (을) | 시설명 | 임천노인복지센터 | 시설종류 | 방문묘양,방문목욕 |
| | 시설장 성명 | 이 용순 (인) | 연락처 | 010-3046-0297 |
| | 주 소 |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가로 96-1 | | |
| 대리인 또는 보호자 (병) | 성 명 | (인) | 관 계 | '갑'의 ( ) |
| | 생년월일 | | 연락처 | 자택)<br>이동전화) |
| | 주 소 | | | |

**제1조 【 목 적 】**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**제2조 【 계약기간 】**

① **계약기간은 2026 년 1 월 1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.**

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**제3조 【 급여범위 】**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'갑' 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.

**제4조 【 급여이용 및 제공 】**

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(제공)계획서에 의한다.

② '갑' 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.

| 구분 | 이용일 | 이용시간 |
|---|---|---|
| 이용 시간(1) | ☐ 월 ☐ 화 ☐ 수 ☐ 목 ☐ 금 ☐ 토 ☐ 일 | ☐ 오전,☐오후 시 분 ~ ☐ 오전,☐오후 시 분 |
| 이용 시간(2) | ☐ 월 ☐ 화 ☐ 수 ☐ 목 ☐ 금 ☐ 토 ☐ 일 | ☐ 오전,☐오후 시 분 ~ ☐ 오전,☐오후 시 분 |

※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

※ '갑' 또는 '병'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'을'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.

③ '을'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. 다만,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.

| 구분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 일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이용시간1 | | | | | | | | ※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|
| 이용시간2 | | | | | | | | |

④ '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'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'을'은 30%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⑤ 야간(18:00~22:00), 심야(22:00~06:00)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'을'은 야간 20%, 심야 30%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⑥ 야간·심야·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.

⑦ '을'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'갑'(또는 '병')과 협의하여 당월○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.

**제5조 【 계약자의 의무 】**

① '갑'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월 이용료 납부
2.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
3.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
4. 기타 '을'과 협의한 규칙 이행

② '을'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1.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
2. 급여제공 중 '갑'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'병'에게 통보
3. 급여제공시간에 '갑'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
4. 급여제공 중 알게 된 '갑'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
   (단,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)
5. 이용상담,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
6.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
7. 기타 '갑'(또는 '병')의 요청에 협조

③ '병'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1. '갑'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2. '갑'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
3.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'을'에게 통보
4. '갑'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'을'에게 통보
5. 기타 '을'의 협조요청 이행

**제6조【 계약해지 요건 】**

① 갑' (또는 '병' )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' 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2.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'갑' (또는 '병' )의 동의 없이 '을' 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
4. 기타 '갑' 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② '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갑' (또는 '병' )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2. '갑' 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3. '갑' 의 건강진단 결과「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4. '갑' 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5.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'갑' 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6. '갑' 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
**제7조 【 계약의 해지 】**

① '갑' (또는 '병' )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.

② '을' 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'갑' 과 '병' 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

**제8조 【 이용료 납부 】**

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'을' 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**매월 ( 31 )일**에 정산하고 '갑' (또는 '병' )에게 **(3 )일까지**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.

③ '갑' 은 매월 이용료를 ( **현금** )으로 ( 10 )일에 납부 한다. 다만,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.

④ '을' 은 '갑' 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.

**제9조 【 재계약 】**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.

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2.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
3.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
4. 기타 '갑' 과 '을' 이 필요한 경우

**제10조 【 건강관리 】**

① '을' 은 '갑' 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'을' 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'갑' 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**제11조【 위급 시 조치 】**

① '을' 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'갑' 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'갑' (또는 '병' )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'병'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'병'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'갑' 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'을' 은 즉시 '병' 에게 통보한다.

**제12조【 개인정보보호 의무 】**

① '갑' 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
② '을' 은 '갑' 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
③ '을' 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'갑' 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
④ '을' 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'갑' 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
⑤ '을' 은 '갑' 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**제13조【 기록 및 공개 】** '을' 은 '갑' 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'갑' (또는 '병' )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14조【 배상책임 】**

① '을' 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'갑' (또는 '병' )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.

1. 장기요양요원(또는 '을' )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'갑' 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2. 장기요양요원(또는 '을' )의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)로 인하여 '갑' 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갑' (또는 '병' )은 '을' 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1.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
2. '을' 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3.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4. '갑' 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제15조(기타)

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.

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'갑'(또는 '병')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 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.

## 제16조 (신원인수의 권리,의무)

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(수급자) 및 보호자간에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
1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

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
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
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

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

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.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
2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

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
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
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
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.

2026년 1 월 1 일

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'갑'과 '병'에게 제공하였습니다.

'을' 시설장 이 용순 (인)

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.

'갑' 이용자 홍 길동 (인)

'병' 대리인(보호자) (인)

# 2026년 월 한도액 및 수가 변동 내역

**1. 등급별 한도액** (단위 : 원)

| 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월 한도액 | **2,512,900** | **2,331,200** | **1,528,200** | **1,409,700** | **1,208,900** | **676,320** |

**2. 방문요양 시간당 수가** (단위 : 원)

| 구분 | 수가 |
|---|---|
| 30분이상(30분) | **17,450** |
| 60분이상(60분) | **25,320** |
| 90분이상(90분) | **34,120** |
| 120분이상(120분) | **43,430** |
| 150분이상(150분) | **50,640** |
| 180분이상(180분) | **57,020** |
| 210분이상(210분) | **63,530** |
| 240분이상(240분) | **70,080** |

**3. 방문목욕 수가** (단위 : 원)

| 구분 | 수가 |
|---|---|
| 차량미이용 | **50,100** |
|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| **80,230** |
| 차량이용 차량내목욕 | **88,990** |

**4. 방문간호 수가** (단위 : 원)

| 구분 | 수가 |
|---|---|
| 30분 미만 | **42,880** |
| 30분 이상(30분) | **53,770** |
| 60분 이상(60분) | **64,690** |

**5. 보험 요율(%)**

| 국민연금 | 건강보험 | 장기요양 | 고용보험(근로자) | 고용보험(사용자) |
|---|---|---|---|---|
| **4.75%** | **3.60%** | **13.14%** | **0.90%** | **1.15%** |

**6. 2026년 시급** (단위 : 원)

| 최저시급 | 주휴수당 | 연차수당 | 포괄시급 | 최저임금 |
|---|---|---|---|---|
| **10,320** | **2,064** | **594** | **12,978** | **2,156,880** |

*포괄시급 : 최저시급+주휴수당+연차수당 *최저임금 : 최저시급*209시간

EasyCell 이지셀

# 기관 서비스 교육제공 내역

□주요 자료제공

1.급여제공교육 및 업무범위 , 기본내역 주요내용

| 제공교육 자료명 | 자료내용 |
|---|---|
| 욕창예방지침(교육자료) | 압력, 마찰, 영양실조, 배설물, 감각지각 장애 등 |
| 낙상예방지침(교육자료) | 운동실시, 안전한 환경, 욕실바닥, 미끄럼방지, 부축예방 등 |
| 탈수예방지침(교육자료) | 원인모르는 미열,식욕 부진 계속, 목의 갈증을 호소 등 |
| 배변도움지침(교육자료) | 변기넣기, 변기빼기, 관찰(배설물의 성상), 색깔, 냄새, 투명도 등 |
| 관절구축지침(교육자료) | 고관절과 무릎, 고관절과 발목, 고관절과 뒤꿈치 등 |
| 치매예방지침(교육자료) | 치매예방자료및 치매 어르신 관리 및 주의 사항에 대한 자료 등 |
| 노인인권보호지침(교육자료) | 언어, 정서적학대, 재정적 학대와 노인복지법 등 |
| 인권침해 대응지침(교육자료) | 급여제공범위, 요양보호사 준수사항,업무범위,불가능업무범위 등 |
| 급여제공계약서설명,부본수령 |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서비스 시작전 계약서 2부 작성후<br>1부 제공받았음 |